임직원 소송지원 규정

제정 2018. 6.21 규정 제9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적극적·능동적 업무수행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이란 공단의 정관 제10조의 임원, 취업규칙 제3조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재직 중 업무수행에 따라 피소임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자를 포함한다.
2. “업무수행”이란 공단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및 규정,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 임직원”이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고소·고발 등의 수사상의 관련자(고소인, 피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민·형사사건 또는 고소·고발 사건 발생 후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요된 제비용으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 법률자문, 문서 작성, 변호인 동행 등에 따른 비용 등)
   나.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비용
5. “송무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의 수행, 지휘, 법률고문의 운영 등 소송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피소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소송지원”이라 함은 공단이 피소 임직원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법률자문, 법률상담, 변호인 입회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단은 적법하게 감사, 인사, 공사감독, 민원응대 등 각종 업무수행을 한 피소 임직원에 대하여 소송지원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소 임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수행의 정황이 있는 경우. 다만, 경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2.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금품수수,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3. 피소 임직원이 민·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피소 임직원이 이 규정의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5. 그 밖에 사건의 불명확성, 공단의 이미지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지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4조(소송의 수행 및 소송비용의 지원) ① 공단은 피소 임직원에 대하여 법률고문 또는 외부 변호사를 피소 임직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소송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소임직원의 소속부서장 또는 피소임직원은 소송지원 사건에 대한 진행사항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송무담당부서장은 피소임직원의 소속부서장 또는 피소임직원에게 소송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소송지원) 공단은 피소 임직원에게 법률고문, 외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의견서 작성, 법적 대응방안 제시 등 법률상담 또는 법률자문
2. 수사 진행상황의 확인, 수사 진행 시 변호인 입회 등 조력

제6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피소 임직원은 민사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전부 패소한 경우 : 지원금액 전액
2. 일부 패소한 경우 : 상대방과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의해 계산된 패소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액

② 소송비용 지원을 받은 피소 임직원이 민사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공단이 지원한 소송비용 범위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을 공단에 귀속시킨다.

③ 피소 임직원은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 확정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1.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상환하지 않음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인사규정'의 직권면직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지원금액 전액 상환
3. 제2호 이외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형벌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1/2의 상환

④ 기타 소송지원 등에 따른 소송비용의 환수는 소송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장 지원절차

제7조(지원신청) ① 피소 임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소 임직원의 소송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송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퇴직한 임직원이 소송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직접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송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피소 임직원의 소송지원요청 사항이 법률자문, 법률상담 등인 경우에는 소송지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실확인 등)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피소 임직원의 소송지원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소 임직원,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 등 관련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은 피소 임직원에 대한 인사사항 또는 대·내외 감사조치 사항에 관한 추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지원 결정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3장 소송지원위원회

제10조(설치) 피소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지원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소송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송무담당부서의 본부장으로 한다.

1. 송무담당부서장
2. 인사업무 담당부서장
3.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5. 법률고문, 노동조합 등 기타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자

② 소송지원위원회의 회의 준비 또는 회의 내용의 기록ㆍ유지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2조(심의ㆍ의결대상) 소송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피소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
2. 소송비용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피소 임직원에 대한 지원중단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소송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송지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소 임직원 또는 피소 임직원의 소속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소송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검토·조사·결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피소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송지원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소송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 의결결과)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4장 기타

제16조(채권보전) 피소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소송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2. 금융기관 예·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3. 피소 임직원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4. 기타 소송지원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임사항)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송무담당부서 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8.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피소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은 본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조를 "규정의 적용범위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본안사건, 행정소송,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소 송 지 원 신 청 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 (인)

본인은 다음의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합니다.

소 속 부 서	(퇴직자의 경우, 퇴직 당시의 부서)		
직 급(직 위)	(퇴직자의 경우, 퇴직 당시의 직급)	성 명 (연락처)	
사 건 종 류		사 건 번 호	
사 건 개 시 일		사 건 종 결 일	
당사자	(성 명) (주 소)		
사건 개요 :			
신청인 의견 :			
피소 임직원 소속부서장 의견(퇴직자의 경우 퇴직 당시의 소속부서장의 의견) :			

신청내용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	합계

첨부 : 1. 소장 또는 공소장 등 소송지원의 필요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관련 서류(임의)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자로 공단에 대하여 소송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서약합니다.

①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이며, 소송지원 결정이나 소송비용을 우선 지원받은 후 소송결과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② 공단이 지원한 비용의 회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때까지 지원된 비용 중 담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③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공단이 지원한 소송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및 기타 제수당 등 지급금액과 지원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④ 본 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조치의 실행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피소 임직원 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 울 시 설 공 단 귀중